

【 주간 이슈 】

유럽 Solvency II의 최근 동향 및 시사점

- 제5차 계량영향평가(QIS 5) 중심으로 -

장동식 수석연구원

- 최근 유럽보험감독자협의회(CEIOPS)는 제5차 계량영향평가(QIS 5)를 통해 금융위기 경험, QIS 4 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한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의 측정방법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있음.
 - CEIOPS는 QIS 5에서 가용자본에 대해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가용자본의 분류·측정 오류를 해소하고 있으며, 또한 기본자본의 요건 강화를 통해 금융위기 기간에 제기된 재무건전성 강화 의견을 반영하고 있음.
 - 금융위기 또는 QIS 4를 통해 새롭게 최소자본기준(pillar 1) 산출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무형자산위험, 비유동성프리미엄위험, 손해보험의 해약위험 등을 요구자본 산정대상에 포함시킴.
- CEIOPS의 QIS 5는 금리·주가 분석 능력 강화 등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음.
 - 부동산 및 주식 가치의 급락, 신용스프레드의 급변동, 모든 자산가치의 동시 급락 등을 반영하여 시장위험의 충격 시나리오와 위험 간 상관계수 및 생명보험위험의 충격 시나리오를 수정함.
 - 이는 보험회사들이 투자영업에 의존할수록 금리·주가 변동 충격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냄.
- 이 같은 QIS 5는 기본자본의 요건 강화, 위험 측정·관리에 대한 보험회사의 능력 제고 등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.
 - 은행부문과 마찬가지로 보험부문도 국제적 추세이므로 기본자본의 요건 강화는 보험업의 건전성 규제에서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임.
 - 감독당국 및 보험회사는 Solvency II의 충격시나리오, 생명보험위험 평가방법, 무형자산위험 평가방법 등을 벤치마킹하여 위험을 측정·관리하는 능력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.
 - 보험회사는 Solvency II처럼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위험을 요구자본 산정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임.

1. 검토배경

- 최근 유럽보험감독자협의회(이하 CEIOPS)¹⁾는 유럽 보험회사 및 각국 감독당국이 새로운 지급여력제도(이하 Solvency II)로 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제5차 계량 영향평가(Quantitative Impact Study 5, 이하 QIS 5)를 실시함.
 - Solvency II는 은행부문(BIS의 3-Pillar 틀)처럼 최소자본기준(pillar 1), 모니터링(pillar 2), 그리고 시장 공시(pillar 3)로 구성
 - CEIOPS는 QIS 5를 통해 우리나라 위험기준 자기자본 제도(이하 RBC 제도)에 해당하는 최소자본기준을 중점적으로 제안하고 있음.
 - CEIOPS는 유럽집행위원회(European Commission, 이하 EC)의 요청에 의해 보험회사들이 Solvency II를 이행 및 준비하는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2010년 8월부터 QIS 5를 실시하고 있음.

- CEIOPS가 QIS 5에서 제안하고 있는 최소자본기준은 2008년에 실시된 QIS 4뿐만 아니라 최근 금융위기를 반영하고 있음.
 - 금융위기 기간에 유럽보험회사들은 모든 자산가치의 동시 하락, 신계약 둔화 및 해약률 증가 등을 경험함.
 - 유럽보험회사들은 과거 경험에 의한 시나리오로는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을 보여줌.
 - 유럽보험회사들은 시장참여자들로부터 재무건전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을 인식함.

- 본고는 금융위기 경험과 QIS 4 결과를 반영하고 있는 QIS 5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고 우리나라 감독당국 등의 재무건전성 정책 또는 전략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.

2. 추진경과 및 기본구조

가. 추진 경과

1) CEIOPS(Committee of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Supervisors)는 2003년 11월에 창립된 유럽연합(European Union)의 레벨 3 위원회로서, 유럽연합 내 각국 보험연금감독자들로 구성됨.

- EC 및 CEIOPS는 2004년부터 Solvency II를 논의하기 시작하였고, 유럽의회 (European Parliament, 이하 EP)는 2009년 4월에 Solvency II 지침을 의결함.
 - EC 및 CEIOPS는 Solvency II를 “금융서비스 실행계획(Financial Service Action Plan)”에 포함된 “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보험회사 재무상태의 개선”을 위해 검토하기 시작함.
 - EC 및 CEIOPS가 검토하고 있는 Solvency II는 각종 위험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, 또한 그룹 감독을 추가하는 새로운 지급여력 제도임.
 - EC는 보험업 감독에 관한 기존 13개 지침을 통합하여 Solvency II 지침(안)을 마련하였고, EP는 2009년 4월에 EC의 Solvency II 지침(안)을 최종 확정함.

- EC 및 CEIOPS는 2009년 4월에 확정된 Solvency II 지침에 의해 세부기준(안)을 마련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해 최근 QIS 5를 실시함.
 - QIS 5는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과 관련한 Solvency II의 세부기준(안)을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여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
 - 이러한 목적의 QIS 5는 보험회사 및 각국 감독당국 간에 Solvency II 준비사항을 논의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.
 - QIS 5는 EC의 요청에 따라 CEIOPS가 4개월간(2010년 8월 ~ 11월) QIS 5를 진행한 후 2011년 4월에 분석결과를 공표할 예정임.

<표 1> Solvency II의 계량영향평가(QIS) 추진 현황

구분	주요 목적	비고
QIS 1	- 책임준비금 적립방법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	2005
QIS 2	- 자산·부채 평가 방법들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- 요구자본 계상방법들을 검증	2006
QIS 3	- 요구자본·가용자본 산정방법들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- 계산식의 실행가능성 및 적합성에 관한 정보수집 및 대안 평가	2007
QIS 4	- 요구자본·가용자본 산정방법들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있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 - 지침(안)내 원칙 및 측정 목표와의 부합여부를 검토 - 보험회사들에게 Solvency II의 이행을 독려	2008
QIS 5	- 요구자본·가용자본 산정방법들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 - 지침 내 원칙 및 측정 목표와의 부합여부를 검토 - 보험회사들에게 Solvency II의 이행을 독려 - 보험회사와 감독당국 간 논의 계기를 제공	2010

나. 기본구조

□ Solvency II는 우리나라 RBC처럼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을 기본구조로 하고 있음.

- Solvency II는 보험회사에 내재된 각종 위험의 크기를 측정하여 요구자본 규모를 결정하고, 이에 상응한 가용자본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음.
 - 이 제도에서 가용자본은 예상치 못한 손실 발생시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위험버퍼를 의미함.
- Solvency II는 요구자본(Solvency Capital Requirements, 이하 SCR)과 최저요구자본(Minimum Capital Requirements, 이하 MCR)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음.
 - SCR은 보험회사의 파산확률을 0.5% 이내로 하기 위해 보유하여야 하는 경제적 자본을, MCR은 보험회사가 영업을 계속할 경우 보험계약자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자본수준을 의미함.
- 그리고 Solvency II는 가용자본과 요구자본(최저요구자본 포함)을 비교하여 감독당국이 감독행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.
 - 가용자본이 최저요구자본보다 적을 경우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경영에 즉시 개입하고, 가용자본이 최저요구자본보다 많으나 요구자본보다 적을 경우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에게 경영개선을 요구하여야 함.

□ Solvency II는 가용자본을 손실흡수능력에 따라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구분하고 있으나, 우리나라 RBC제도는 가용자본을 손실흡수여부에 따라 가산차감항목과 차감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음.

< 표 2 > 자본 요건에 따른 자본의 분류

자본요건	기본자본	보완자본1	
	1종 자본(Tier 1)	2종 자본(Tier 2)	3종 자본(Tier 3)
가용성	●		
영구성	●	●	
후순위성	●	●	●

주: ● 충족

- Solvency II의 기본자본은 1종 자본(Tier 1 자본)으로 가용성, 영구성 및 후순위성의 자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본을, 보완자본은 2종 자본(Tier 2) 및 3종 자본(Tier 3)으로 일부 자본요건만을 충족하는 자본을 말함²⁾.

- 2종 자본(Tier 2)은 영구성과 후순위성 요건은 충족되나 가용성 요건은 부분 충족되는 자본을, 3종 자본(Tier 3)은 후순위성 요건은 충족되나 가용성과 영구성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 자본을 말함.

□ Solvency II는 RBC 제도와 유사하게 시장(금리 포함)·신용·보험·운영 위험의 크기를 측정하여 요구자본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.

<표 3> Solvency II 위험구분 변화

구분	Solvency II의 QIS 4	Solvency II의 QIS 5	비고(RBC)
시장위험	금리, 주식, 부동산, 스프레드, 외환, 집중	금리, 주식, 부동산, 스프레드, 외환, 집중, 비유동성프리미엄	금리: 현예금, 채권, 수익증권, 만기보유증권, 대출채권 시장: 단기매매증권
신용위험	신용위험	신용위험	현예금, 매도가능증권, 대출채권, 부동산
건강보험위험	비용, 손해사망계약취소, 전염병·누적감염	생명보험성: 사망, 장수, 질병, 해약, 비용, 전환 손해보험성: 보험료준비금, 해약, 거대	보험가격
생명보험위험	사망, 장수, 질병, 해약, 비용, 전환, 거대	사망, 장수, 질병, 해약, 비용, 전환, 거대	보험가격
손해보험위험	보험료준비금, 거대	보험료준비금, 해약, 거대	보험가격준비금
무형자산위험	-	무형자산위험	-
운영위험	운영위험	운영위험	운영위험

자료: 1. CEIOPS(2007), 「QIS4 Technical Specifications」, CEIOPS-DOC-23/07

2. EC(2010), 「QIS5 Technical Specifications」

3. 금융감독원(2009), 「보험회사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 해설서」

- QIS 5는 시장(금리 포함)·신용·보험·운영 위험에 무형자산위험을 추가하여 요구자본을 계상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.
- 시장위험의 하부위험에 비유동성프리미엄위험을, 손해보험의 하부위험에 해약위험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, 그리고 건강보험위험의 하부위험 구분을 생명보험위험과 손해보험위험의 하부위험을 준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.
- 새롭게 추가된 무형자산위험은 재무건전성 목적에 부합한 무형자산을 요구자본 및 가용자본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EC의 의견을 수용한 것임²⁾.

2) 2종 자본은 기본자본과 달리 이자나 배당 지급 또는 원금상환 의무 등이 존재하여 사업을 지속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흡수하는 데에 제약이 있으며, 3종 자본은 청산 시에만 손실흔수능력이 나타남.

- 시장위험에 추가된 비유동성프리미엄위험은 생명보험회사의 해약을 증가, 보증기관의 신용등급 하락과 추가담보 요구 등으로 유동성 제약이 발생한 금융위기 경험을 반영한 것임.
- 손해보험위험에 추가된 해약위험과 건강보험위험의 세부위험 변경은 감독당국 등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위험을 반영하고, 보험회사들이 관련위험을 올바르게 분류하지 못한 경우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.
- Solvency II에 추가된 위험 또는 변경된 위험은 우리나라 보험회사들도 지니고 있으므로 감독당국은 향후 이를 검토하여 RBC 반영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.

3.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 주요 내용 고찰(Solvency II의 QIS 5 중심)

가. 가용자본

□ 최근 Solvency II는 가용자본의 분류·측정 오류를 해소하기 위해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을 이전보다 상세히 규정함.

- 장래보험료에 포함된 평균이익은 기본자본(Tier 1)에 포함시키고, 제한된 준비금, 금융기관·신용기관 지분, 순이연법인세 자산 등은 기본자본에서 제외함.
- 금융기관 및 신용기관에 대한 지분은 기본자본에서 차감하고, 금융기관 및 신용기관에 대한 투자는 2종 자본(Tier 2)에서 차감
- 기본자본에서 차감한 순이연법인세 자산은 3종자본(Tier 3)에 포함시킴.
- 기타자산으로 계상한 무형자산(영업권 제외)은 3종자본에 포함시킴.
- 이와 같이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 관련내용을 상세히 규정한 것은 QIS 4에서 나타난 가용자본의 분류·측정 오류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.

□ 또한 Solvency II는 금융기관들은 기본자본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금융위기 경험을 반영하여 은행부문처럼 기본자본의 요건을 강화함⁴⁾.

- 최근 Solvency II는 기본자본의 요건을 SCR의 50.0% 이상 및 MCR의 80% 이상으로 강화함.
- 이 같은 기본자본의 요건 강화는 금융업권간 규제의 일관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음.

3) CEIOPS(2010)의 「DRAFT: Technical specifications for QIS 5」 참조

4) 유럽보험협회(CEA)는 SCR 기준 기본자본 요건의 강화에는 찬성의견을 나타냈으나, 신종자본증권의 한도에는 반대의견을 나타냄.("CEA Additional contribution on CP46 on Own Funds - Own Funds eligibility and criteria" 참조)

- 이에 우리나라 감독당국도 Solvency II 처럼 금융업권간 규제의 일관성을 제고 한다는 측면에서 기본자본의 요건의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.

<표 4> Solvency II의 가용자본 요건

구분	Solvency II의 QIS 4			Solvency II의 QIS 5		
	기본자본	보완자본		기본자본	보완자본	
	1종 자본	2종 자본	3종 자본	1종 자본	2종 자본	3종 자본
SCR 대비	33.3% 이상	66.6% 미만 (33.3% 미만)		50.0% 이상	50.0% 미만 (15.0% 미만)	
MCR 대비	50.0% 이상	50.0% 미만	0.0%	80.0% 이상	20.0% 미만	0.0%

자료: EC(2010), 「QIS5 Technical Specifications」

나. 요구자본(표준모형 중심)

<시장위험>

□ 시장위험의 경우 Solvency II는 부동산 및 주식 가치의 급락, 신용스프레드의 급변동, 모든 자산가치의 동시 급락 등을 반영하여 시장위험과 관련한 충격시나리오를 수정하고, 시장위험의 하부위험 간 상관계수를 상향 조정함.

- 금리위험: 3개월, 6개월, 21년~30년을 기존 만기구분에 추가한 후 만기별 상승·하락 충격시나리오를 조정함.
 - 예를 들면 1년 만기에 적용하는 상승·하락 충격시나리오는 94% / -51%에서 70% / -75%로 수정함.
- 주식위험: 충격시나리오를 글로벌 시장 32% / 기타시장 45%에서 글로벌 시장 30% / 기타시장 40%로 변경함.
- 부동산위험: 충격시나리오를 20% 하락에서 25%하락으로 수정함.
- 외환위험: 충격시나리오를 20% 변동에서 25% 변동으로 조정함.
- 비유동성프리미엄위험: 충격시나리오를 -65%로 설정함.
- 시장위험의 세부 위험 간 상관계수: QIS 4보다 높게 설정함.
 - 예를 들면 Up 시나리오의 경우에 신용스프레드위험과 금리위험 간 상관계수는 0.25에서 0.50으로, 신용스프레드위험과 주식위험 간 상관계수는 0.25에서 0.75로 상향 조정됨.

- 이러한 충격시나리오 및 시장위험의 세부 위험 간 상관계수에 대한 제안은 금융 위기 동안 보험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및 주식 가치의 급락, 신용스프레드의 급변동, 모든 자산가치의 동시 급락 등을 경험한 것을 반영한 것임.

□ Solvency II의 시장위험 충격시나리오는 1990년대 외환위기, 최근 금융위기 등의 경험과 함께 우리나라 감독당국 및 보험회사에게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.

- 금융위기는 과거 경험에 기반한 시장위험관련 시나리오로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 보험회사들이 직면할 수 있음을 보여줌.
- 따라서 우리나라 감독당국 및 보험회사들도 다른 나라의 경험을 함께 고려하여 시장위험관련 시나리오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.

<신용위험>

□ 신용위험의 경우 Solvency II는 신용등급 유무 및 위험분산 여부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파산위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유형 1과 유형 2로 거래상대방의 파산위험을 구분하여 거래상대방의 파산위험 특성을 반영함.

- 유형 1은 재보험계약, 파생상품 등과 같이 신용평가등급은 있으나 위험이 분산되지 않은 신용위험으로 손실분포의 분산을 이용하여 이를 측정
- 유형 2는 미수금(receivables from intermediaries), 계약자 대출(모기지 대출 포함) 등과 같이 신용평가등급은 없으나 위험이 분산된 신용위험으로 익스포져, 위험계수, 3개월 후 회수 가능금액 등을 이용하여 이를 측정
- 이러한 신용위험 관련제안은 금융위기를 통해 신용등급 유무 및 위험분산 여부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파산위험이 다르게 나타난 경험을 반영한 것임.

□ Solvency II의 신용위험 관련제안은 우리나라 감독당국 및 보험회사들이 신용위험 분석능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됨.

- Solvency II는 신용등급 유무와 위험분산 유무에 따라 신용위험 측정·평가 방법을 적용하고 있음.
- 이 방법은 향후 우리나라 감독당국이 RBC의 신용위험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.
- 그러나 Solvency II의 신용위험 관련제안은 QIS 5 등을 통해 계속 검증되어야

하므로 감독당국 등은 지속적으로 이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.

< 생명보험위험 >

□ 생명보험위험의 경우 Solvency II는 보험회사 내부모형 내 사망률 충격시나리오, 일부 감독당국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생명보험위험에 적용되는 충격시나리오를 강화함.

- 생명보험위험은 평가시점의 시장금리, 사망률, 사업비율, 해약률 등을 반영하여 책임준비금의 최선추정치 산출하고, 이 기초 하에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산출한 책임준비금의 증가분으로 측정
 - 이에 Solvency II의 생명보험위험 산출방법은 시장금리, 사망률, 사업비율, 해약률 등이 책임준비금의 최선추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음.
- 최근 Solvency II는 책임준비금의 증가분 측정에 적용할 충격시나리오를 수정하여 제안함.
 - 예를 들면 사망위험의 충격시나리오로는 15% 증가를, 질병위험의 충격시나리오로는 1차년도 50% / 이후 25% 증가 등을 제안함.
- 이러한 제안은 보험회사들이 내부모형에서 적용하고 있는 사망률 충격시나리오⁵⁾와 사망률 충격시나리오를 높여야 한다는 일부 감독당국의 의견을 반영한 것임.

<표 5> 생명보험위험의 세부위험별 충격시나리오 변화

구분	QIS 4	QIS 5	비고(RBC)
사망위험	10% 증가	사망률 15%	위험률차 손익 시나리오 (500개)
장수위험	사망률 25% 감소	사망률 25%	
질병위험	1차년도 질병률 35% 증가 2차년도 이후 질병률 25% 증가	1차년도 질병률 50% 증가 2차년도 이후 질병률 25% 증가 회복율 20% 하락	
비용위험	10% 증가		
전환위험	연금지급액 3% 증가	연금지급액 3% 증가	
해약위험	해약률 50% 증가 해약률 50% 감소	유지율 50% 또는 20%(p) 감소 유지율 50% 증가	
거대위험	1년 이내 사망률 1.5%(p)	1년 이내 사망률 1.5%(p)	

자료: 1. CEIOPS(2007), 「QIS4 Technical Specifications」, CEIOPS-DOC-23/07

2. EC(2010), 「QIS5 Technical Specifications」

5) 25분위: 13%, 50분위: 22%, 75분위: 29%

□ Solvency II의 생명보험위험 산출방법은 부채시가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 RBC에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향후 많은 검토를 필요로 함.

- Solvency II는 부채시가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, RBC는 원가(또는 요율책임 시의 예정기초율)를 전제로 하고 있음.
- 이 때문에 RBC는 Solvency II처럼 악화된 손해율로 인해 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해야하는 위험을 요구자본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.
- 따라서 RBC에 Solvency II의 생명보험위험 산출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향후 부채시가평가 등을 많이 검토하여야 함.

<무형자산위험>

□ 신설된 무형자산위험의 경우 재무건전성 목적에 부합하다면 무형자산이 지니고 있는 위험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는 EC의 의견을 반영하여 무형자산의 가치에 위험계수를 적용하여 무형자산의 가치하락 위험을 측정

- Solvency II는 무형자산위험을 무형자산의 가치에 위험계수 0.8을 무형자산위험에 적용하여 산출할 것을 제안함.
 - 이 경우 무형자산의 가치는 동일 또는 유사한 자산의 교환가치로 측정되어야 함.
 - 다만 교환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무형자산과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대상에서 제외함.
 - Solvency II는 위험계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음.
- Solvency II의 무형자산위험 관련제안은 재무건전성 목적에 부합하다면 무형자산이 지니고 있는 위험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는 EC의 의견을 수용한 것임.
- Solvency II는 무형자산이 예측하지 못한 유동성 부족으로 시장가치가 낮아지는 위험시장, 그리고 무형자산의 무형자산이 지니고 있는 장래 기대이익이 더 이상 기대되어지지 않는 내부위험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.
- 이와 같은 Solvency II의 무형자산위험 관련제안은 재무건전성 목적에 부합한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RBC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음.
 - 현행 우리나라 RBC는 자산가치가 없다는 인식하에 무형자산을 요구자본 및 가용자본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.

4. 시사점

- 은행부문과 마찬가지로 보험부문도 국제적 추세이므로 기본자본의 요건 강화는 우리나라 보험업의 건전성규제에서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임.
 - Solvency II는 기본자본의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 기준을 제안하고 있는데, 이는 은행부문이 보통주의 비중을 높이는 것과 달리 가용자본 내 기본자본의 비중을 높이는 것임.
 - 우리나라 감독당국도 보험업에 적용되는 기본자본의 요건을 강화하여 국제적 추세에 부합할 필요가 있음.
 - 다만 기본자본의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일부 보험회사에게 자본 확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.
- 감독당국 및 보험회사는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획득할 수 있도록 Solvency II처럼 가능한 모든 위험을 요구자본 산정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.
 - 최근 Solvency II는 무형자산위험, 자산의 비유동성프리미엄위험, 손해보험의 해약위험을 새롭게 반영함.
 - 이는 공정가치로 측정가능한 모든 위험을 고려하여 요구자본을 계상하여야 시장 참여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함.
- 보험회사들은 점차 투자영업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위험분석능력을 향상시켜 금리·주가 변동에 대비하여야 할 것임.
 - 최근 금융위기는 보험회사들이 과거 경험하지 못한 수준으로 자산가치가 하락하고, 또한 모든 자산이 동시에 가치가 하락할 수 있음을 보여줌.
 - 보험회사들이 투자영업에 의존할수록 금리·주가 변동에 대해 취약성이 노출되며, 이에 위험 중심 경영을 통해 금리·주가 변동 충격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.
 - 우리나라 보험회사들도 투자영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유럽보험회사처럼 위험 중심 경영을 강화하여 금리·주가 변동 충격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.
- 보험회사 및 감독당국은 Solvency II의 충격시나리오, 생명보험위험 평가방법, 무형자산위험 평가방법 등을 벤치마킹하여 위험을 측정·관리하는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.

- 금융위기는 과거 경험에 기반한 시장위험관련 시나리오로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 보험회사들이 직면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Solvency II의 시장위험에 적용된 충격시나리오도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음.
- 재무건전성 목적에 부합한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요구자본 및 가용자본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, 이 경우 Solvency II가 제안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무형자산위험 측정·평가 방법이 도움을 줄 수 있음.
- 자산의 비유동성프리미엄위험과 손해보험의 해약위험은 우리나라 보험회사도 지니고 있는 위험이므로 보험회사들이 Solvency II가 제안한 방법을 통해 이들 위험을 측정·관리하는 능력을 제고할 수 있음.
- 향후 감독당국 및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위험을 공정가치로 측정·평가할 필요가 있으므로 Solvency II에서 제안하고 있는 생명보험위험 측정·평가 방법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. KiRi